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009번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 : 2016년 2월 11일
- 회부일 : 2016년 2월 15일

## 2. 제안이유

-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대응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정안에 대해 동의를 구함.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제2항에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장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2조)

- 1)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

#### 나. 기능(안 제3조)

-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 2)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 3)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 강화
- 4)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 5)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 다. 구성(안 제4조)

- 1)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 2)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 준수 및 회비 납부 등의 의무

#### 라. 임원(안 제5조)

- 1) 공동회장(상임회장 1인 포함) 3명, 부회장(권역별) 10명 이내

#### 마. 임원의 임기(안 제6조)

- 1) 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바.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2)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2조)

- 1)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
- 2)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 하여야 함.

아. 자문위원(안 제13조)

- 1)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둠.
- 2)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함.

자. 분과위원회의 설치(안 제14조)

- 1)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차. 실무협의회(안 제15조)

- 1)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 2)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함.

카. 사무국(안 제16조)

- 1)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를 둠.
- 2) 사무국장은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 부서 직원으로 함.

타. 경비부담(안 제17조)

- 1)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함.

파. 효력발생(안 부칙)

- 1)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나. 예산조치 : 협의회 회비(5백만원) 부담

다. 합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운영규정 동의안 : 붙임

## 5. 검토 의견

### 가. 동의안 개요 및 필요성 검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함)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치도록 하고 있어<sup>1)</sup>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행정협의회 개요>

- ▶ 개념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기구
- ▶ 목적
  -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구성
-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

- 동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2013년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수원)에서 38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언” 발표이후,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개최(2015. 9)하였음.
- 동 협의회 구성이후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제정 확대, 마을만들기 제도개선 방안 공동연구 추진,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체계 운영확대 등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 지원제도 개선 및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1)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추진 경위

- 2013. 9 : 제6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수원)에서 38개 자치단체장이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언” 발표
- 2015. 8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및 참여 요청 (수원시)
- **2015. 9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 개최**
  - 광역 4개(서울, 경기, 광주, 강원), 기초 52개 참여
- **2015. 9 : 행정자치부에 협의체 설립 신고**
  - 2015.10.23 : 행정자치부 회신(행자부 자치행정과-5527호)
    -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법 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구성 가능 하다고 회신
- 2015.10.26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안내
- 2015.12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고시문 송부
  - 2016년 추진 사업 논의 및 예산확보 등
- 2016. 1 : 행정자치부(자치행정과)에 협의회 설립 신고
  - 비영리법인 등록 승인 완료

- 행정협의회는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기구로,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을 위해 구성하는 것임.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간의 협의회로, 서울시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바, 지금까지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서울시는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그 역할이 모호하고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자문위원의 역할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등 집행부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나.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주요내용 검토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 방향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 현재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52개이며(참고 1), 운영규정의 지방의회 동의를 이미 받은 자치단체는 24개(46.2%, 2016년 1월 기준, 참고 2)수준임.
  - ※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경기도, 강원도, 광주광역시)는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참여함.

### <운영규정 체계 및 주요 내용>

규정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명칭)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제2조(목적)	-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
제3조(기능)	- 마을만들기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등
제4조(구성)	- 구성, 결의사항 준수, 회비 납부
제5조~제6조(임원, 임기)	- 공동회장 3명 등, 임기 2년 1회 연임
제7조~제8조(회의 및 의결, 회장단 회의)	- 정기회의 연2회,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회장단회의 공동회장이 필요시
제9조~제11조(의안제출, 안건배부 등)	- 20일 전까지 제출 - 필요시 의견제출 협조 요청
제12조(회의결과 조치)	- 회의록 작성, 회원에게 통보
제13조(자문위원)	- 광역자치단체장은 당연직 자문위원
제14조~제16조(분과위원회 설치, 실무협의회, 사무국)	-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제17조(경비부담)	- 공동사무 처리에 따른 필요경비 공동 부담
제18조(수당 등)	- 자문위원에게 실비 지급
제19조(회계보고 및 결산)	- 정기회의에서 집행상황 보고
제20조(해산)	- 해산시 재산은 유사협의회 등에 귀속
제21조(규정개정)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제22조(운영세칙)	- 규정 이외의 것은 회장단 의결로 정함

- 동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협의회 명칭,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협의회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바, 동 규정 제17조에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및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지나친 사업비 부담 등의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적정 사업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집행부는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동 협의회설립과 관련하여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추진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미비한 측면이 있는 바, 향후 의회의 권한이 경시되지 않도록 하는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자문위원의 경우 경비 연 5백만원, 일반회원 연 2백만원

- 특히, 지방정부협의회 등 행정협의회는 법 제157조2)에 따라,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협력이 아닌 참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바,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 등 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협의회 운영규정 등에 대한 의회의 동의이후 사업시행 과정에서도 추진사항에 대한 의회보고 및 협의 등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 협의회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또한, 현재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성,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미참여 자치구(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의 참여방안 마련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

## 참고 자료 1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동의 지자체 명단

○ 자문위원회 : 4개 광역자치단체

시도명	직위	단체장명	시도명	직위	단체장명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경기도	도지사	남경필
광주광역시	시장	윤장현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

○ 협의회 : 52개 기초자치단체

연번	시도명	자치단체	단체장명	연번	시도명	자치단체	단체장명
1	경기도 (9)	광명시	양기대	27	서울특별시 (20)	강동구	이해식
2		군포시	김윤주	28		강북구	박겸수
3		김포시	유영록	29		강서구	노현송
4		부천시	김만수	30		관악구	유종필
5		수원시	염태영	31		광진구	김기동
6		시흥시	김윤식	32		구로구	이성
7		안산시	제종길	33		금천구	차성수
8		안성시	황은성	34		노원구	김성환
9		오산시	곽상욱	35		도봉구	이동진
10	경상남도 (4)	거창군	이흥기	36		동대문구	유덕열
11		사천시	송도근	37		동작구	이창우
12		함안군	차정섭	38		마포구	박홍섭
13		합천군	하창환	39		서대문구	문석진
14	광주광역시 (4)	광산구	민형배	40		성동구	정원오
15		남구	최영호	41		성북구	김영배
16		북구	송광운	42		영등포구	조길형
17		서구	임우진	43		은평구	김우영
18	인천광역시 (2)	남구	박우섭	44		종로구	김영종
19		부평구	홍미영	45		중구	최창식
			46	양천구		김수영	
20	전라남도(2)	담양군	최형식	47	충청남도(2)	논산시	황명선
21		해남군	박철환	48	아산시	복기왕	
22	전라북도 (5)	무주군	황정수	49	충청북도	충주시	조길형
23		완주군	박성일	50	강원도 (3)	강릉시	최명희
24		전주시	김승수	51		정선군	전정환
25		정읍시	김생기	52		평창군	심재국
26		진안군	이항로				

## 참고 자료 2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완료 지자체(24개) 명단

연번	시도명	자치단체	의회 동의 일자	연번	시도명	자치단체	의회 동의 일자
1	경기도 (5)	부천시	'15.12.22	13	충남 (1)  서울 특별시 (12)	논산시	'15.12.24
2		수원시	'15.12.17	14		강동구	'15.12.18
3		시흥시	'15.12.15	15		강북구	'15.12.15
4	광주 광역시 (2)	안성시	'15.12.21	16		금천구	'15.12.16
5		오산시	'15.11.10	17		노원구	'15.12.18
6		광산구	'15.12.18	18		동작구	'15.12.17
7	인천 광역시 (1)	서 구	'15.12.18	19		마포구	'15.12.17
8		남 구	'15.12.18	20		서대문구	'15.11.21
9		완주군	'15.12.18	21		성동구	'15.12.21
10	전라 북도 (4)	무주군	'16.02.18	22		성북구	'15.12.18
11		전주시	'15.12.08	23		은평구	'15.12.14
12		진안군	'15.12.02	24		양천구	'15.12.22

### 전국 행정협의회 현황 (2013년 12월 기준)

구분	계	권역별			기능별
		소계	광역권	기초권	
누계	87	43	12	31	44
'13년 신규	4	2	-	2	2